#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93

발의연월일: 2025. 4. 28.

발 의 자: 장철민·채현일·민병덕

박정현 · 송재봉 · 박지원

김영환 · 이소영 · 허 영

조승래 의원 (10인)

# 제안이유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은 과학기술 R&D, 공공행정, 첨단 산업 등이 집약되어 고유한 산업구조와 성장잠재력을 풍부하게 보유 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 지역임.

그런데 수도권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인하여 충청권 소재 기업들은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에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의 자금 확보에 불리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상황임.

이에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기반의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충청권 산업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자생적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충청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 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충청권산업투자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정부, 충청권 지 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하 도록 함(안 제5조).
- 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장은 충청권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그 밖에 임원의 직무,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 라.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 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마. 충청권산업투자공사의 예산과 결산, 손익금의 처리, 사채의 발행, 여유자금의 운용 등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부터 제28조까지).
- 바. 충청권의 신산업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벤처기업 육성, 산업 구조의 재편, 충청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충청권산업투자공 사에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함(안 제29조).

#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충청권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충청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충청권"이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의 관할 구역을 말한다.
  - 2. "금융회사"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 제3조(법인) 충청권산업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다.
  -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자본)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한다.

- ② 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한다.
- 1. 정부
- 2.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③ 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출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각 은행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 납입 시기 및 방법 등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출장소에 관한 사항
  -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 5.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6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8. 제29조에 따른 충청권산업혁신기금에 관한 사항
- 9. 사채 및 제31조에 따른 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10. 회계에 관한 사항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2.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 ②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 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공사의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 3. 정관의 변경
- 4.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 5. 예산의 편성 · 변경 및 결산
- 6. 제29조에 따른 충청권산업혁신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7. 그 밖에 공사 및 제29조에 따른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다.
  - 1. 공사의 사장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3.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인 경우에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5. 충청권 지역금융 및 충청권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 가. 충청권에 소재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 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충청권에 소재한 사무소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 자업자의 임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그 밖에 금융·경제·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0 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 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임원과 직원

- 제12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을 두고, 부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사장은 충청권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 ③ 부사장과 이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 ④ 감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15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3.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그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7조(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 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4장 업무

- 제20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충청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 2. 충청권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3. 국가 또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
  - 4.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제29조에 따른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관리 및 운용
    - 나. 공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투자 융자
  - 5. 그 밖에 충청권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업무
  - ②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의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 원부장과의 승인을 받아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 제21조(업무방법서) 공사는 제20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22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3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3.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 4. 주주에 대한 배당
  -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 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 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후에도 부족 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또는 제29조에 따른 충청권산업혁신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④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수 있다.
  -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 제26조(차입)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제27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국채·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2. 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에의 예치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 제28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20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공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삭제하여야 한다.

# 제6장 충청권산업혁신기금

- 제29조(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설치) 충청권의 신산업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벤처기업 육성, 산업구조의 재편, 충청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공사에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 제3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 2. 정부의 출연금
  - 3.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4. 금융회사의 출연금
  - 5. 제31조에 따른 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6.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 부터의 차입금
  - 7.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 8. 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 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31조(충청권산업혁신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충청권 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충청권산업 혁신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 조건, 발행방

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⑤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32조(기금의 관리 · 운용 등)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 · 운용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충청권 소재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 가. 자금의 대출
    - 나. 자산의 매수
    -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 마. 사채의 인수
    -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 2. 채권의 원리금 상환
  - 3. 제30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4. 기금의 관리·운용 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 ③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제33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 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 ② 공사는 기금의 회계를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經理)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 제35조(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6조(보고·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

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 ·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 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37조(공고) 공사는 공사경영 및 투자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1.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 2. 회계감사보고서
  - 3. 위원회가 의결한 기금운용계획
- 제38조(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① 공사는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단체 또는 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위원과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8장 벌칙

- 제40조(벌칙) ①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를 위반하여 충남권산업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사의 설립 준비) ① 이 법에 따라 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면 또는 위촉한다.
  - ④ 준비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⑥ 준비위원회는 사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준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